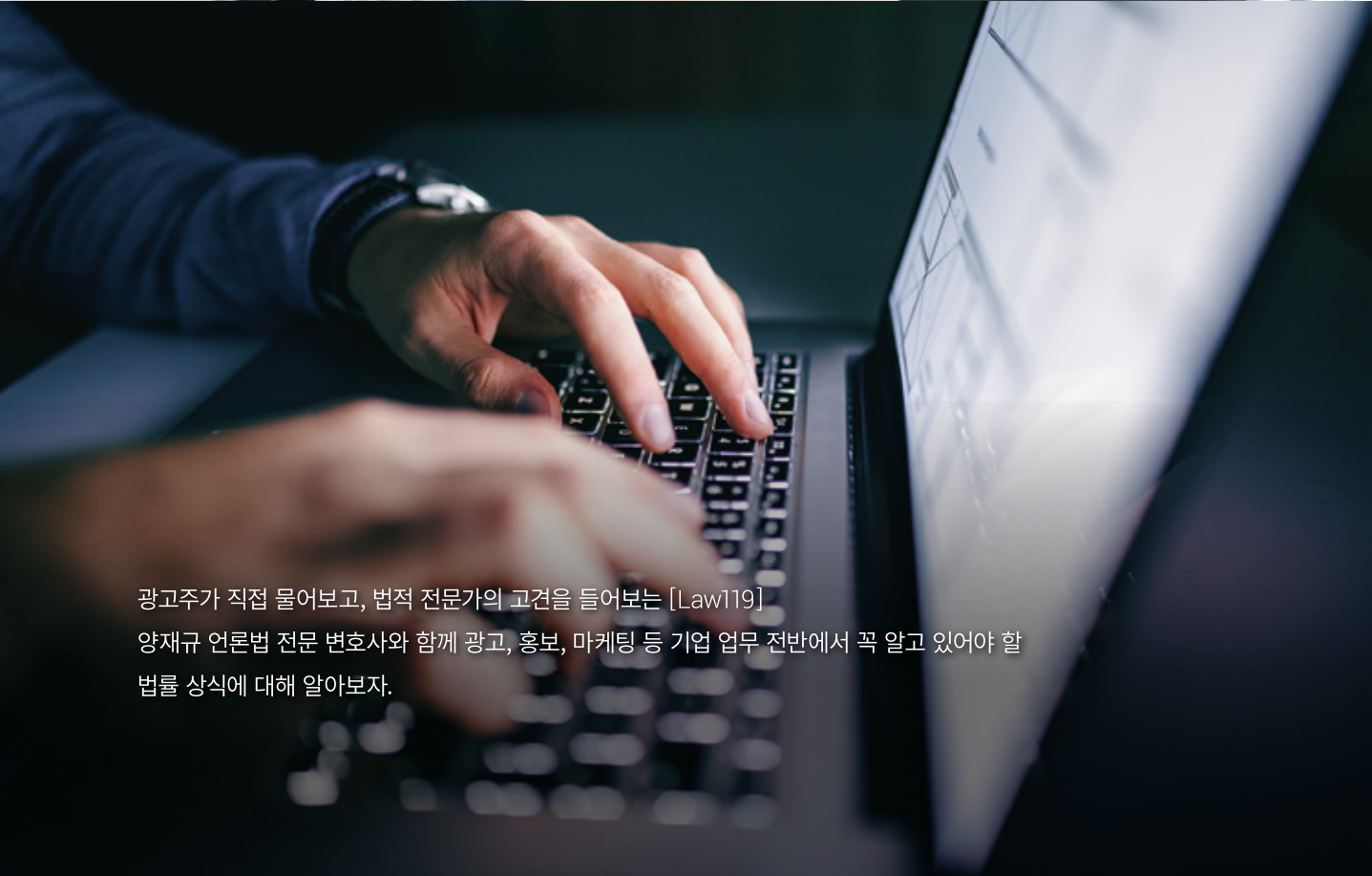


# 기사삭제청구권은 없어도 기사삭제는 있다

글 양재규 | 언론법 전문 변호사  
eselltree92@gmail.com



광고주가 직접 물어보고, 법적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는 [Law119]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광고,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업무 전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기사의 수정 내지 삭제 가능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이다. 기사삭제에 관한 언론사의 입장은 사뭇 복잡하다. 대외적으로는 역사적 기록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정정보도보다 쉽고, 가볍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Q** 오보 대응 시, 잘못된 기사의 신속한 삭제야말로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보로 인한 피해 확산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단계에서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있어도 기사삭제 청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법적으로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언론조정 단계에서 기사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이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보겠다.

현행법상 오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로 크게 네 종류다. 기사삭제청구는 현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권리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기사삭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쯤 국회를 통과, 시행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상황이 이러



니 기사삭제청구가 없다는 말, 절반은 맞다.

그런데 지금도 기사삭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숨겨진 조항’이 있다. 바로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 단서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요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생뚱맞은 위치에,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으니 그 의미는 물론이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 많지 않다.

어떤 목적과 경위로 단서 조항이 만들어졌는지는 모호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정정보도라는 것이 별건의 후속기사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기사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내지 삭제 또한 정정보도의 한 방법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법으로도 별도의 보도문을 내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내지 삭제의 방식으로 정정보도청구를 과감히(!) 시도해볼 수 있다. 누군가 근거를 따지고 든다면,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 단서를 제시하면 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정보도라고 하면 당연히 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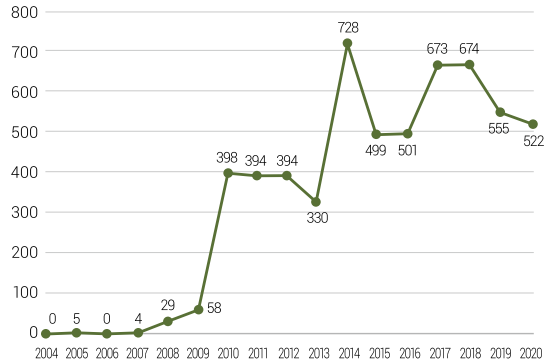
의 후속보도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막상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기사삭제 내지 수정을 청구해오는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복잡할 것 없이 기사삭제를 얻어낼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 정정보도든, 손해배상이든 일단 현행법으로 가능한 청구를 한 후 조정 과정에서 기사삭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언론조정을 통한 기사삭제에 대해 연구한 논문<sup>1</sup>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기사수정 내지 삭제<sup>2</sup>가 이미 실질적인 언론피해구제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2,925건의 기사수정 내지 삭제 사례가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41.8%, 손해배상청구사건의 35.2%가 기사수정 내지 삭제로 처리되었다. 요컨대, 기사삭제청구권은 없지만 이미 실무에서 기사삭제는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끝으로, 기사삭제는 어떤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소개한 논문에서는 네 종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체로 기사의 허위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였다. 물론, 내용이 허위 는 아니지만 결코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공개한 경우에도 기사삭제가 인정되었다. 결국, 기사삭제가 실무상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그 관건은 내용의 허위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린 것이다. ㉠

\*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yoojh1999@kaa.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신 질문 중 주제를 선정, [Law19]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림】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열람차단 사례의 연도별 추이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실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보도, 인격권 분야에서 언론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1 오윤미,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기사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2)

2 해당 논문에서는 '기사삭제' 또는 '기사수정' 대신 '열람차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실무상의 관행인데, '기사삭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조정실무에서는 '삭제'와 '열람차단'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기사삭제'라고 하면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기사까지 삭제하라는 의미이고, 언론사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문제 되는 기사 내용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열람차단'이라고 부른다.